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1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3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한민수 · 장철민
박 정 · 윤준병 · 김남희
허성무 · 이소영 · 서영교
서미화 · 윤후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('24.6)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.

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.

이에 「영유아보육법」과 「유아교육법」 상의 대상, 기관,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2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

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
되어야 할 것임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보육정책위원회)”를 “(보육교육정책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각각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“보육정책위원회”라”를 ““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

호,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, 같은 항 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““어린이집”은”을 ““영유아학교”는”으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한국보육진흥원”을 각각 “한국보육교육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어린이집 평가의”를 “영유아학교 평가의”로,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9조의3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보육통합정보시스템”을 각각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보육통합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, “보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8호 및 제1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보육정보시스템”을 각각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

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,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, “어린이집,”을 “영유아학교,”로,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을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를”로, “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

교 외의 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은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는”으로, “보육계획”을 “보육교육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을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를 국공립영유아학교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”를 “국공립영유아학교로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을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를”로, “국공립어린이집의”를 “국공립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

항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어린이집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5조의3제1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(기인가 어린이집)이라 한다”를 “영유아학교(기인가 영유아학교)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

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1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수 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의2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3의 제목·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

제2호·제4호 및 제5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4의 제목 중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,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각각 “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”를 “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의5의 제목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의6제1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의7의 제목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1조의2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·제1항 및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수교육(補修教育)을”을 “교사연수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수교육은”을 각각 “교사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한다.

제23조의2의 제목 중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보수교육(補修教育)을”을 “교사연수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

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수교육은”을 각각 “교사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수교육”을 각각 “교사연수”로 한다.

제23조의3제1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에”를 “영유아학교에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을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민간어린이집을”을 “민간영유아학교를”로, “국공립어린이집으로”를 “국공립영유아학교로”로, “그 어린이집을”을 “그 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”를 “민간영유아학교를 국공립영유아학교로”로, “그 어린이집을”을 “그 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,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24조의3(중전의 제24조의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

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24조의2(입학) ①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로 한다.

② 영유아학교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영유아를 모집·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·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(시·도에 한정한다)는 영유아의 보육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의 모집·선발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어린이집운영위원회)”를 “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 운영의”를 “영유아학교 운영의”로, “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, “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직장의 어린이집”을 “직장의 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

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보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,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5호의2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“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제25조의2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 제25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·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“무상보육”을 “무상보육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““어린이집”은”을 ““영유아학교”는”으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2. 영유아학교

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·단서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린이집과”를 “영유아학교와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보육과정)”을 “(보육교육과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표준보육과정”을 “표준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표준보육과정”을 “표준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과정”을 “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

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의2의 제목 중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 운영의”을 “영유아학교 운영의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를 공공형영유아학교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각각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의3의 제목 중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공형어린이집이”를 “공공형영유아학교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건강진단”을 “건강검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강진단”을 “건강검진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단서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

1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건강진단”을 “건강검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 거주자”를 “영유아학교 거주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어린이집으로부터”를 “영유아학교로부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건강진단”을 “건강검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진단 및 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3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3조의3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3조의4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4조의 제목 “(무상보육)”을 “(무상보육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무상보육”을 각각 “무상보육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

“무상보육”을 “무상보육교육”으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34조의2제1항 중 “어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36조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37조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어린이집 이용에”를 “영유아학교 이용에”로 한다.

제38조의2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

은 조 제1호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41조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에”를 “영유아학교에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2호·제4호·제4호의2 및 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어린이집에서”를 “영유아학교에서”로, “어린이집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로”로 한다.

제43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을”

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 운영에”를 “영유아학교 운영에”로 한다.
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3호의2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각각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의2 중 “어린이집운영위원회”를 “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의9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44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4조의3제2항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5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어린이집 운영정지”를 “영유아학교 운영정지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4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어린이집에”를 “영유아학교에”로, “어린이집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로”로 한다.

제45조의2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
목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
3호 중 “보수교육을”을 “교사연수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어린
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
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
· 단서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2호 중 “보수교육을”을 “교사연수를”로 한다.

제4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
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9조 중 “공공형어린이집”을 “공공형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9조의2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
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
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
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
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
“어린이집 보육과정”을 “영유아학교 보육교육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
제4호 ·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
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

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린이집으로서”를 “영유아학교로서”로, “어린이집에”를 “영유아학교에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 원장의”를 “영유아학교 원장의”로, “어린이집과의”를 “영유아학교와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에 근무하는”을 “영유아학교에 근무하는”으로, “유치원교원”을 “영유아학교교원”으로, “어린이집에서의”를 “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에서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치원(”을 “영유아학교(”로, “유치원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유치원에서의”를 “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에서의”로 한다.

제51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“보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보수교육”을 “교사연수”로 한다.

제52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으로서”를 “영유아학교로서”로, “어린이집의”를 각각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,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, “보육교직원”을 “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53조의 제목 “(어린이집연합회)”를 “(영유아학교연합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의”를 “영유아학교의”로, “어린이집 간의”를 “영유아학교 간의”로, “어린이집연합회”를 “영유아학교연합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연합회”를 “영유아학교연합회”로 한다.

제5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·제3호·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1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유아학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

제56조제2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“건강진단”을 각각 “건강검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어린이집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,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,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, 협동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은 이 법에 따른 국공립영유아학교, 사회복지법인영유아학교, 법인·단체등영유아학교, 직장영유아학교, 가정영유아학교, 협동영유아학교, 민간영유아학교로 각각 본다.

제3조(보육교직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

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교직원으로 본다.

제4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로 본다.

제5조(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보육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본다.

제6조(보수교육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은 이 법에 따른 교사연수로 본다.

제7조(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,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, 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로 각각 본다.

제8조(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정보시스템으로 본다.

제9조(보육과정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과정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과정으로 본다.

제10조(보육계획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은 이 법에 따른 보육교육계획으로 본다.

제11조(건강검진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

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은 이 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본다.
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④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9의 제목 중 “가정어린이집”을 “가정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“가정어린이집을”

을 각각 “가정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⑥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진단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영유아의 건강검진”으로 한다.

⑦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⑧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제9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⑨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(이하 “직장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영유아학교(이하 “직장영유아학교”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직장어린이집의”를 “직장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21조의2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직

장어린이집의”를 “직장영유아학교의”로 한다.

제22조의2제5항제2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다목3)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⑪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⑫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⑬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3호나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”을 “학교·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영유아학교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5조에 따른 영유아학교운영

위원회

제68조제9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⑮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사목2)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⑯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2의 제목 중 “가정어린이집”을 “가정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⑲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8호 중 “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”을 “영유아학교의 원장 등 교직원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9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⑳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제10호 중 “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”을 “영유아학교의 원장 등 교직원”으로 한다.

㉒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5항제2호마목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국공립어린이집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46조의9의 제목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㉓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원장”으로 한다.

㉔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㉕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(이하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를”로,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6조의2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7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제6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0조제5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6조제1항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7조제3항제3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②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9조의3제1항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

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2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2호 중 “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”을 “영유아학교의 원장 등 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6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㉖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가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6조의2제4항 중 “보육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㉗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1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의 제목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㉙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국공립어린이집을”을 “국공립영유아학교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”를 “민간영유아학교 또는 가정영유아학교를 국공립영유아학교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은”을 “영유아학교는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6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2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, “어린이집으로”를 “영유아학교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어린이집이”를 “영유아학교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·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“어린이집”을 각각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4조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3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③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59조의4제2항제8호 중 “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”을 “영유아학교의 원장 등 교직원”으로 한다.

③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 및 그 교직원과”로 한다.

③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7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9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집을”을 “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402조제3항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5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용 토지”를 “영유아학교용 토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직장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“종전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종전영유아학교”라 한다)를”로, “종전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종전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직장어린이집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(이하 이 조에서 “신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신규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신규영유아학교를”로, “신규어린이집의”를 “신규영유아학교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신규어린이집을”을 “신규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신규어린이집”을 “신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제1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

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,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각각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직장어린이집을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를”로 한다.

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37조제1항제3호 중 “직장어린이집”을 “직장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제7호 중 “보육통합정보시스템”을 “보육교육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④⑥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2항제3호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④⑦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
과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학교와”로 한다.

④⑧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(이하 “영유아학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학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“어린이집”을 “영유아학교”로 한다.

제1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(조례를 포함한다)에서 종전의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용어 및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<u>어린이집</u>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.
3. “ <u>어린이집</u> 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	3.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“ <u>보육교직원</u> ”이란 <u>어린이집</u>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<u>어린이집</u> 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<u>어린이집</u> 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	5. -- <u>교직원</u>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.
제4조(책임) ①·② (생략)	제4조(책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

③ -----

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.

④ -----교직원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보육교육정책위원회) ① 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--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·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(이하 “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

--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-----.

② 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“보육교육정책위원회”라-----
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.

③ 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-----.

④ 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-----.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----

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
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
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
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
전문 컨설팅

2. (생략)

3.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
한 상담 제공

4.·5. (생략)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
공

가.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
를 위한 교육

나.·다. (생략)

6의2.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
지원 및 관리

7.·8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
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
센터(이하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
라 한다)에는 육아종합지원센
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
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, 보육교

-----.

-----.

1. 영유아학교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교직원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--교직원-----

가. 교직원-----

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
6의2. 교직원-----

7.·8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교직

직원의 정서적·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·상담·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.

③ ~ ⑤ (생략)

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·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어린이집”은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, “어린이집의 원장”은 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”으로 본다.

제8조(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2.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

원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. -----“영유아학교”는-----

-----영유

아학교의-----

-----.

제8조(한국보육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) ① -----

-----한

국보육교육진흥원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영유아학교-----

3. 제22조제1항에 따른 <u>보육교 직원의</u> 자격 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 지원	3. ----- <u>교직원</u> - ----- -----
4.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<u>보수교육</u> 의 총괄 관 리 및 지원	4. ----- ----- <u>교사연수</u> ----- -----
5.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 하여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지원, 제3 0조에 따른 <u>어린이집 평가</u> 의 지원 및 제30조의2에 따른 <u>공 공형어린이집</u> 의 지정을 위한 지원과 제41조에 따른 지도와 명령 및 제42조에 따른 보고 와 검사에 대한 사전준비 또 는 사후관리 지원	5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 평가</u> ----- ----- ----- <u>공공형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9조(보육 실태 조사) ① (생 략)	제9조(보육 실태 조사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<u>어린 이집</u> 설치·운영자와 관계 기 관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	② ----- ----- <u>영 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의3(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·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보육정보시스템”이라고 한다)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유할 수 있으며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

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3(보육교육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-----

-----보육교육정보시스템-----.

② -----
보육교육정보시스템-----보육교육정보시스템-----

-----.

1. -----교직원-----

등에 관한 자료	-----
2.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자료	2.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제27조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	4.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6. 제30조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평가에 관한 자료	6.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제31조의2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안전공제사업 등에 관한 자료	8.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9. · 10. (생략)	9. · 10. (현행과 같음)
11.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	11.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12. (생략)	12.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부장관은 <u>보육정보시스템</u> 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건강관리, 건강검진 관련 정보로 한정한다)나 같은 법 제24	③ ----- <u>보육교육정보시스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
④ 보육정보시스템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⑤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공립어린이집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

-----.

-----.

④ 보육교육정보시스템-----

-----.

⑤ 보육교육정보시스템-----

-----.

제2장 영유아학교의 설치

제10조(영유아학교의 종류) 영유아학교-----
-----.

1. ---영유아학교-----영유아학교

2. -----영유아학교-----

영유아학교

3. -----영유아학교-----

비영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<u>어린이집</u> 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어린이집</u>	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4. 직장 <u>어린이집</u>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<u>어린이집</u> 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<u>어린이집</u> 을 포함한다)	4.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5. 가정 <u>어린이집</u>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<u>어린이집</u>	5.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6. 협동 <u>어린이집</u>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<u>보육교직원</u> 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<u>어린이집</u>	6.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<u>교직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7. 민간 <u>어린이집</u>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<u>어린이집</u>	7.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제11조(<u>보육계획</u> 의 수립 및 시행)	제11조(<u>보육교육계획</u> 의 수립 및

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,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,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) ① -----

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--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보육교육계획-----.
--보육교육계획-----국공립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보육교육계획-----
-----영유아학교,-----

-----영유아학교와-----
-----.

③ -----보육교육계획-----

-----.

제11조의2(어린이집 또는 어린이
집용지 확보) 시·도지사, 시장
·군수·구청장은 「도시개발
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
법」, 「택지개발촉진법」,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률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
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·정
비·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
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

제11조의2(영유아학교 또는 영유
아학교용지 확보) -----

영유아학교-----
영유아학교-----
-----.

제12조(국공립영유아학교의 설치
등) ① -----
-국공립영유아학교를-----국
공립영유아학교 외의 영유아학
교를-----

아학교는-----국공립영유
아학교는-----보육교육계
획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국공립영유아학교를 -----

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)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

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영유아학
교를 국공립영유아학교로-----
-----.

-----국공
립영유아학교로-----

-----.

④ -----국공립영유아
학교를-----
-----국공립영유
아학교의-----
-----.

제13조(국공립영유아학교 외의 영유아학교의 설치) ① 국공립영유아학교-----영유아학교를

-----.

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,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위탁보육”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직장영유아학교의 설치 등)

① -----

-----직장영유아학교를-----
-----.
-----직장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직장영유아학교를-----
-----영유아학교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14조의2(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) ①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(“조사기관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,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,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(“미이행 사업장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

제14조의2(직장영유아학교 설치
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
등) ① -----

직장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
-----직장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-----

따른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
그 공표 여부에 관하여 제6조
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
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· ⑤ (생 략)

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
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
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
사의 내용과 방법, 미이행 사업
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제15조(어린이집 설치기준) 어린
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려는 자는
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
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놀이
터,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
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
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
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.

제15조의2(놀이터 설치) ① 어린
이집을 설치 · 운영하는 자는
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
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
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

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
회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직장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15조(영유아학교 설치기준) 영
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-----.

제15조의2(놀이터 설치) ① 영유
아학교를-----

-----.

-----영유아학

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

2. 100미터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·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다.

제15조의3(비상재해대비시설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교는-----.

1. -----영유아학교

2. -----

-----영유아학교

② -----

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

-----영유아학교---

-----.

제15조의3(비상재해대비시설) ①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(“기인가 어린이집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위원의 임기,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

② -----

-----영유아
학교(“기인가 영유아학교”라 한다)

-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지방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-----.

제15조의4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①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

집의 보안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이하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라 한다)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

2.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

학교의-----

-----.

1. 영유아학교를-----

2.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교직원-----

② -----

-----교직원-----

-----.

1. -----

안전과 <u>어린이집</u>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. 영유아 및 <u>보육교직원</u>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. 영유아 및 <u>보육교직원</u>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<u>어린이집</u>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 제15조의5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(생 략) ② <u>어린이집</u>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2. (생 략)	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-----<u>교직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. -----<u>교직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③ <u>영유아학교</u>를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5(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영유아학교</u>를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
--	---

③ 어린이집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·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·관리 및 열람 실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·점검하여야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

1. ~ 6. (생략)

7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

③ 영유아학교를

④ 영
유아 학교
교직원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결격사유) -----
-----영
유아학교를-----
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영유아학교-----

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
되지 아니한 자 또는 「유아
교육법」 제32조에 따라 폐쇄
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
아니한 자

8.·9. (생 략)

제3장 보육교직원

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① 어
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
야 한다.

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
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
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
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
배치할 수 있다.

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
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
보조교사 등을 둔다.

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
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
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
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
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
력을 배치한다.

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
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

8.·9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교직원

제17조(교직원의 배치) ① 영유아
학교-----교직원-----
-.

② -----

영유아학교는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④ -----교사연수-----
-----교직원-----

-----교직원-----
-----.

⑤ 교직원-----

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보육교직원의 직무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,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·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한다.

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의2(보육교직원의 책무)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·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·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3(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보육교직원이 보육 활동을 원활하게

-----.

제18조(교직원의 직무) ① 영유아 학교의-----영유아학교를

-----.

② -----
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18조의2(교직원의 책무) ① 교 직원-----

-----.

② 교직원-----

-----.

제18조의3(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) ① -----

-----교직원-----

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·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

3. (생략)

4.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, 노무 및 심리·정서 관련 상담

5.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(생략)

제18조의4(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.

---.

② -----교직원-----

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교직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교직원-----

5. -----교직원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4(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교직원-----

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----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

1.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
2. 제2항에 따른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

-----.

1. 교직원-----
2. -----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-
3. -----교직원-----
--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

② 교직원-----

-----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-

-. -----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-

-----시·도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-----

-----.

1. 교직원-----

2.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과
관련된 분쟁의 조정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
와 시·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
의 구성, 설치·운영 등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제18조의5(보육교직원의 영유아
생활지도) ① 어린이집의 원장
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
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
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
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
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8조의6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
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
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
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
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
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

2. 교직원-----

③ -----
-----보육교육활동보호
위원회와 시·도보육교육활동
보호위원회-----

-----.

제18조의5(교직원의 영유아 생활
지도) ①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6(보호자의 의무 등) ①
-----교직원-----

-----.

② -----
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-----
영유아학교-----

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
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
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7(보육교직원 개인정보
의 보호) 어린이집을 설치·운
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의 전
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
정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될
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
야 한다.

제19조(보육교직원의 임면 등) ①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
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
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
의 임면(任免)과 경력 등에 관
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
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
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

--.

제18조의7(교직원 개인정보의 보
호) 영유아학교를-----
-----교직원-----

--.

제19조(교직원의 임면 등) ① ---

-----교직원

-----교직원-----
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-----교직
원-----

-----.

제20조(결격사유) 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제21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1조의2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(생략)

1. ~ 3. (생략)

제22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(이하 “보육자격증 교부등”

-----영유아학교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영유아학교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) ①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영유아학교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영유아학교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) ① 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-----
영유아학교-----

이라 한다)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③ ~ ⑥ (생략)

제22조의2(명의대여 등의 금지)

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3조(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)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명의대여 등의 금지)

① 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영유아학교 원장의 교사연수) ① -----영유아학교-----교사연수-----
-----교사연수는-----
-----.

② -----교사연수는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교사연수-----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<u>어린이집</u> 원장의 <u>인성함양</u> (영유아의 <u>인권보호</u> 교육을 포함한다) 7. (생략) ⑤ 그 밖에 <u>보수교육</u>의 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제23조의2(보육교사의 <u>보수교육</u>)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<u>보수교육</u>(補修敎育)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보수교육</u>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<u>보수교육</u>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<u>보수교육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략) ④ 그 밖에 <u>보수교육</u>의 기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제23조의3(교육명령) ① 교육부장관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법	6.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7. (현행과 같음) ⑤ -----<u>교사연수</u>----- ----- -----. 제23조의2(보육교사의 <u>교사연수</u>) ① ----- -----<u>교사연수를</u>----- -----. -----<u>교사연수는</u>----- -----. ② -----<u>교사연수는</u>----- ----- -----. ③ -----<u>교사연수</u>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교사연수</u>----- ----- -----. 제23조의3(교육명령) ① ----- ----- -----
--	---

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 및 제20조제1호의 결격사유(제1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.

② (생략)

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

---영유아학교를---

----영유아학교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영유아학교의 운영

제24조(영유아학교의 운영기준 등)

①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

② -----

-----국공립영유아학교를-----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
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
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
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
쟁의 방법에 따른다.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
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
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
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
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
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
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
자
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
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
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
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
· 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
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
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
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

국공립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1. 민간영유아학교를-----

국공립영유아학교로-----
-----그 영유
아학교를-----

2. 국공립영유아학교-----

3. -----
민간영유아학교를 국공립영유
아학교로-----
-----그 영유아학교를-----

③ -----직장영유아
학교를-----

-----.

④ -----영유

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
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
정한다.

<신 설>

제24조의2(보육시간의 구분) ①
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
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
수 있다.

1. 기본보육: 어린이집을 이용

아학교-----

-----.

제24조의2(입학) ① 영유아학교에
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
로 한다.

② 영유아학교의 원장은 교육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
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영유
아학교에 입학할 영유아를 모
집·선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
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·선
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
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(시·도에 한
정한다)는 영유아의 보육교육
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
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의 모
집·선발 시기, 절차 및 방법
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
할 수 있다.

제24조의3(보육시간의 구분) ①
영유아학교는-----

-----.

1. -----영유아학교를----

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

2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25조(어린이집운영위원회) ①

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脆弱保育)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, 보육교사 대표,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(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)로 구성한다. 이 경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) ①

영유아학교의-----영유아학교 운영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에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----.

-----영유아학교와-----영유아학교는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.

②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직장의 영유아학교-----

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3. 3의2. (생략)
4. 보육 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- 5의2.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
6. (생략)
7.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력

---. 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의-----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.

-----.

④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-----

1. 영유아학교-----

2. 영유아학교-----

3. 3의2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5. 교직원-----

5의2. 교직원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7. 영유아학교와-----

에 관한 사항 8. (생 략) 9. 그 밖에 <u>어린이집</u>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⑤ <u>어린이집운영위원회</u>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⑥ 그 밖에 <u>어린이집운영위원회</u>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 제25조의2(부모모니터링단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어린이집</u>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, 보육·보건 전문가로 점검단(이하 이 조에서 “부모모니터링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1. <u>어린이집</u> 급식, 위생,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. <u>어린이집</u>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----- 8. (현행과 같음) 9.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⑤ <u>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</u>----- -----. ⑥ -----<u>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</u>----- -----. 제25조의2(부모모니터링단) ① -- ----- 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1.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2.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

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어린이집</u>에 출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⑥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.
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<u>어린이집</u>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<u>어린이집</u>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	⑦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.
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<u>어린이집</u>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<u>어린이집</u>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<u>어린이집</u>에 출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.	⑧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.
⑨ (생략) 제25조의3(보호자의 <u>어린이집</u> 참관) ①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·보육내용 등 <u>어린이집</u>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<u>어린이집</u> 원장에게 <u>어린이</u>	⑨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3(보호자의 <u>영유아학교</u> 참관) ①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-----<u>영유</u>

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다. 이
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
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
다.

② (생 략)

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
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
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
장은 영아·장애아·「다문화
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
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
한 보육(이하 “취약보육”이라
한다)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
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
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「유
아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무
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
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
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
수 있다. 이 경우 시간제보육
서비스의 종류, 지원대상, 지원

아학교-----.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)

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와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6조의2(시간제보육 서비스) ①

-----무상보육교육-----

-----.

방법,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어린이집

3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·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어린이집”은 “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”으로, “어린이집의 원장”은 “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”으로 본다.

제27조(어린이집 이용대상) 어린이

_____.

②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영유아학교

3. (현행과 같음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“영유아
학교”는 -----
----- 영유아학
교의 -----

제27조(영유아학교 이용대상) 영

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.

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②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유아학교-----

---. -----영유아학교-----

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---

-----영유아학교와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영

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-----영유아

학교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직장영유아

학교를-----

-----.

③ (생 략)

제29조(보육과정) 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·정서·언어·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2항의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(이하 “특별활동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보육교육과정) ① 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.

② -----표준보육교육과정-----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표준보육교육과정-----
-----.

④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-----영유아학교-----

마련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보육과정,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대상 영유아의 연령 및 특별활동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2(어린이집 생활기록)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·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0조(어린이집 평가) ①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, 보육과정 운영,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, 어린이집 운

-----.

⑤ -----보육교육과정

-----.

제29조의2(영유아학교 생활기록)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30조(영유아학교 평가) ① ----

영유아학교-----보육교육과정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영유아학교
-----영유아학교-----

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3. (생략)

4.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거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

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

-----.

③ -----
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④ 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영유아학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영유아학교-----
교직원-----

⑤ 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⑥ (생 략)

제30조의2(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)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30조의3(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) ① 교육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공공형영유아학교의 지정) ① -----영유아 학교 운영의-----

영유아학교의-----

영유아학교를 공공형영유아학교로-----.

② -----공공형영유아학교-----
-----공공형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③ -----공공형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3(공공형영유아학교의 지정 취소) ① -----

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

② (생략)

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·사고 또는 재해 등

공공형영유아학교가-----

---.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공공형영유아학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 ①

영유아학교-----

교직원-----

---건강검진-----

-----.

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
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의2(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)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(이하 “공제사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공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며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.

-----.

③ -----건강검진-----

-----.

제31조의2(영유아학교 안전공제사업 등) ① 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교직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② -----
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·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

3.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

⑤ ~ ⑩ (생략)

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 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⑫ (생략)

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
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에 따른

④ ----- 영유아학
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교직원-----

3. 영유아학교-----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⑪ 영유아학교-----

⑫ (현행과 같음)

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

① 영유아학교-----

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

-----.
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
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 ① 영유아학교-----
-----건강검진-----

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,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

2. (생략)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,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(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)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,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

-----.

② 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 거주자-----
-----교직원-----
-----영유아학교로부터-----
-----.

1. -----건강검진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③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영유아학교-----

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이
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
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33조(급식 관리) 어린이집의 원
장은 영유아에게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
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
여야 한다.

제33조의2(어린이집 차량안전관
리)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
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
하는 경우 「도로교통법」 제5
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
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
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3(등·하원 시 영유아
안전관리) ① 어린이집의 원장
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
·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
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등·하
원 시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
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
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
야 하고,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
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

-----.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제33조(급식 관리) 영유아학교---

-----.

제33조의2(영유아학교 차량안전
관리) 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33조의3(등·하원 시 영유아
안전관리) ① 영유아학교-----
-----교직원-----

-----.

② 영유아학교-----

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33조의4(어린이집 위생관리)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4조(무상보육) ① (생 략)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4(영유아학교 위생관리) 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제34조(무상보육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무상보육교육-----

-----.

③ -----무상보육교육-----

-----.

④ -----영유아학교-----

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.

⑤ (생 략)

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,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,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

제34조의2(양육수당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무상보육교육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.

⑦ -----

-----중앙보육교육정책위원회-----

⑧ (현행과 같음)

제34조의2(양육수당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영유아학교-----

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----- -----.
② ~ ⑦ (생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의 설치, <u>보육교직원</u> 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(超過保育)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<u>보육교직원</u> 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,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	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 ----- ----- ----- 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<u>교직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교직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7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 제14조에 따라 <u>어린이집</u> 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<u>어린이집</u> 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	제37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 ---- ----- <u>영유아학교를</u> --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의</u> ----- ----- -----.
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<u>어린이집</u> 을 설치·운영하	제38조(보육료의 수납 등) ① ---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를</u> -----

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②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,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,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,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2(목적 외 사용 금지)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②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영유아학교이용에-----

제38조의2(목적 외 사용 금지) 영유아학교를-----

---영유아학교의-----영

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9조(세제 지원)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제39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분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유재산을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

유아학교의

제39조(세제 지원) ①

-----직장영

유아학교를

② -----직장영유아

학교를-----영유아학교의--

제39조의2(국·공유재산의 대부분 등)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

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
할 수 있다.

1.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
집

2.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
중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
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
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
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
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, 육아중
합지원센터의 장, 보수교육 위
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
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
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
명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·폐쇄
또는 취소된 경우

2. ~ 5. (생략)

제40조의2(보육비용 지원액 등의
환수) ① (생략)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
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

-----.

1. -----국공립영유아
학교

2. 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

교

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
령) -----영

유아학교-----

-----교사연수-----

-----.

1. 영유아학교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40조의2(보육비용 지원액 등의
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
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
부를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
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
려주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1조(지도와 명령) 교육부장관,
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
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
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·
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
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
수 있다.

제42조(보고와 검사) ① 교육부장
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
·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
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
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
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
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
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1조(지도와 명령)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교직원-----
-----.

제42조(보고와 검사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-----영유
아학교에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2조의2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집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
3. (생략)

4.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
4의2. 제33조의4에 따른 어린이 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

5.·6. (생략)

7.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자

8.·9. (생략)

②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

제42조의2(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영유아
학교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영유아학
교-----

4의2. -----영유아
학교---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영유
아학교-----

8.·9. (현행과 같음)

② 영유아학교를-----
-----교직원-----

이유로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· ④ (생략)

제43조(어린이집의 폐지·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)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(어린이집에 대한 휴원 명령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---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43조(영유아학교의 폐지·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) ① -----
-----영유아학
교를-----

-----.

② 영유아학교의-----영
유아학교가-----

-----영유아학교에서-----
-----영유아
학교로-----

-----.

제43조의2(영유아학교에 대한 휴원 명령) ① -----

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,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

-----영유아학교-----
-----.

② -----
영유아학교의-----
---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 운영에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) ---

-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.

1. -----

가를 받지 아니하고 <u>어린이집</u> 을 운영하는 경우	----- <u>영유아학</u> <u>교를</u> -----
2. 제15조,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	2.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
2의2. (생략)	2의2. (현행과 같음)
3. 제17조제5항에 따른 <u>보육교</u> <u>직원의</u>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	3. ----- <u>교직원</u> ----- -----
3의2. 제19조제2항에 따른 <u>보육</u> <u>교직원의</u>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3의2. ----- <u>교직</u> <u>원</u> ----- ----- -----
4. 제24조제1항에 따른 <u>어린이</u> <u>집의</u>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	4. ----- <u>영유아</u> <u>학교</u> ----- --
4의2.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<u>어린이집운영위원회</u> 를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	4의2.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</u> ----- -----
4의3. ~ 4의8. (생략)	4의3. ~ 4의8. (현행과 같음)
4의9. 제33조의4에 따른 <u>어린이</u> <u>집의</u>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4의9. ----- <u>영유아</u> <u>학교</u> -----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7.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<u>어린이집</u> 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	7. ----- ----- <u>영유아학교를</u> ----- -----

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	----- --
7의2. ~ 8. (생 략) 제44조의2(<u>직장어린이집</u> 설치의 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명령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·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 업장의 사업주가 <u>직장어린이집</u> 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.	7의2. ~ 8. (현행과 같음) 제44조의2(<u>직장영유아학교</u>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 행명령) ----- ----- -----<u>직장영유아학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4조의3(이행강제금) ① (생 략) ②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<u>직장어린이집</u> 미설치 기간·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 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 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	제44조의3(이행강제금) ① (현행 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직장영유아학교</u>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⑦ (생 략) 제45조(<u>어린이집</u>의 폐쇄 등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<u>어린이집</u> 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45조(<u>영유아학교</u>의 폐쇄 등) ① ----- -----<u>영유아학교</u>를 ----- ----- -----

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·운영자의 관리·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·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 (설치·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.

1. ~ 1의3. (생략)

1의4.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
2. ~ 5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설치·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·검사를 실시

-----영유아학
교 운영정지-----영유아학
교의-----.

-----교직원-----

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
1의4. -----영
유아학교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교직원-----

-----.

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⑤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(생 략)

제45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영유아
학교가-----
-----영유
아학교에-----
-----영유아학교로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2(과징금 처분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
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
교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5조의3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,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. 다만,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·

제45조의3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

---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-----.

② -----
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양수인·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.

제46조(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
정지)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
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(「아
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
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
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) 이
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
정지시킬 수 있다.

1.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

--영유아학교를

제46조(영유아학교의 원장의 자격정지) ① -----영유아학교-----

1. 영유아학교

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
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~ 마. (생 략)

2. (생 략)

3.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
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
한 경우

4. ~ 6. (생 략)

7.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
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
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
정하게 사용한 경우

8.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
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
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
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
한 경우

②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의
원장이 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
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
영유아의 하차 여부 확인에 관
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
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
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
입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
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교사연수를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영유
아학교-----

8. -----

-----교직원-----

② -----영유아학교--

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의 지도·감독 하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(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. 다만,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·2. (생략)

제47조(보육교사의 자격정지)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)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

---.

③ 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보육교사의 자격정지) ①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교사연수

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
아니한 경우

② (생 략)

제48조(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
육교사의 자격취소) ① 교육부
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
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
소할 수 있다.

1. ~ 8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49조(청문) 교육부장관, 시·도
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
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
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
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2(어린이집 정보의 공시
등)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
린이집이 보유·관리하는 다음
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
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
이집의 원장은 공시한 정보(이
하 이 조에서 “공시정보”라 한
다)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
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

를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8조(영유아학교의 원장 또는
보육교사의 자격취소) ① ----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청문) -----

-----공공형영유아
학교-----

-----.

제49조의2(영유아학교 정보의 공
시 등) ① 영유아학교의-----
----영유아학교가-----

-----.
----영유아학교-----

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어린이집의 시설, 설치·운영자,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

2.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4. 어린이집 예산·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6.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·③ (생략)

④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.

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홍보하거나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

-----.

1. 영유아학교-----
-----교직원-----

2. -----영유아학교
보육교육과정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영유아학교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영유아
학교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영유아
학교-----

⑤ 영유아학교의-----영
유아학교를-----

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.

⑥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, 처분내용,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,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(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

-----.

⑥ -----
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-----영유아학교-----

-----.

제49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-

-----영유아학교로서-----

-----영유아학교에-----
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-----영유아학교 원장의-----

해당한다)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공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
② 교육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영유아학교와의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영유아학교

②

영유아학교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50조(경력의 인정) ① 어린이집
에 근무하는 자 중 「유아교육
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
 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
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「유아
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경력으로
 인정한다.

② 유치원(「유아교육법」 제2
 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
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
치원을 말한다)에 근무하는 자
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
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
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
 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하
 다.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교육
 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
 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
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
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
 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
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
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

제50조(경력의 인정) ① 영유아학
교에 근무하는-----
 -----영유아학교교원

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에서
의-----

 -.

② 영유아학교(-----

영유아학교를-----

 -----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영
유아학교에서의-----

 -----.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-----

 -----.

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1의2.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
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
4.·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,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-----보육교
육정보시스템-----

2. -----영유아
학교-----

3. -----
-----교사연수-----

4.·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영유아학교) ① -----

-----영유아학교로서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교직원-----
-----영유아학교의-----

-----지방보육정책위원회-----

를 거쳐 관할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,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3조(어린이집연합회)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, 어린이집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,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(벌칙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

-----.

② -----

-영유아학교-----
----교직원-----
-----.

제53조(영유아학교연합회) ① ---
-----영유아
학교의-----영유
아학교 간의-----
-----영
유아학교연합회-----
---.

② 영유아학교연합회-----

-----.

제54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유아학교의 설치인가를 받지

<u>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</u>	<u>아니한 자</u>
<u>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</u>	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	2. -----
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	-----
<u>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</u>	<u>영유아학교</u> -----
<u>경인가를 받은 자</u>	-----
3.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	3. -----
자기의 성명이나 <u>어린이집의</u>	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
명칭을 사용하여 <u>어린이집의</u>	----- <u>영유아학</u>
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	<u>교</u> -----
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	-----

3의2. ~ 5. (생략)	3의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	6. -----
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	-----
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	-----
등을 받은 <u>어린이집의 설치·</u>	----- <u>영유아학교</u> -----
<u>운영자</u>	-----
7.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<u>어린</u>	7. ----- <u>영유</u>
<u>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</u>	<u>아학교</u> -----
<u>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</u>	-----
<u>정하게 사용한 자</u>	-----
8. 제45조제1항에 따른 <u>어린이</u>	8. ----- <u>영유아</u>
<u>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</u>	<u>학교</u> ----- <u>영유</u>
<u>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</u>	<u>아학교</u> -----
<u>업을 계속한 자</u>	-----

제5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· 2. (생 략)

3.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. 다만,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.

4. · 5. (생 략)

④ (생 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영유아학교를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건강검진-----

-----건강검진-----

-----.

4. · 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